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1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매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6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2017년 1월 1일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 <u>행정규제기본법</u> 」에 <u>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2017년 1월 1일